

# 호주 최저임금결정제도의 특징 및 관련 논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호주

채민희 (호주 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 서문

호주의 최저임금결정제도는 「2009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을 기반으로 한다. 동 법에 따라 공정근로위원회 전문가 패널(The Fair Work Commission's Expert Panel; 이하 공정근로위원회)은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연간 『근로소득리뷰(Annual Wage Review)』 보고서를 통해 이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 명시된 최저임금 수준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점인 7월 1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실례로 위원회는 2018년 『근로소득리뷰』 보고서에서 ‘최저임금명령(The National Minimum Wage Order)’을 통해 2017~18 회계연도 국가 최저임금수준이 주급(주 38시간 근로 기준) 719.20호주달러(한화 약 58만 8천 원)라고 명시하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은 호주 최저임금결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공정근로위원회는 국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뿐만 아니라 업종, 직종 등에 따라 차등화된 최저임금(Modern Award Minimum Wage) 수준도 매년 결정한다.

둘째, 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논의 시 임금 등 근로자 관련 거시경제 관련 지표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이나 사업부도율 등 다양한 경제지표를 참고로 한다.

셋째, 소속 및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최저임금 인상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

1) <https://www.fwc.gov.au/documents/awardsandorders/html/pr606629.htm>

는 기회가 있고,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제안 내역을 반드시 『근로소득리뷰』 보고서에 발표해야 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호주 최저임금결정제도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제도적 특징

### 최저임금 차등화 제도

호주 최저임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업종이나 산업, 기술 수준 등에 따라 최저임금(이하 ‘개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결정한다는 점이다. 국가 최저임금 수준은 해당 직종이나 산업에 대한 개별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가 최저임금을 받는 성인 근로자는 호주 총 근로자 중 1.9%인 반면 22.7%<sup>2)</sup>의 총 근로자가 개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sup>3)</sup>

공정근로위원회는 매년 국가 최저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별 최저임금도 모두 검토하고 기존 수준 변경이나 적용 폐지 혹은 신설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국가 최저임금 결정과 개별 최저임금 의사결정은 서로 관련은 있지만 엄연히 분리된 의사결정사항이다. 위원회는 먼저 국가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어느 정도 형성한 이후에 제안된 국가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개별 최저임금을 따로 검토한다.

공식적으로 이러한 개별 최저임금은 ‘모던어워드 최저임금(Modern Awards Minimum Wage)’이라고 부른다. 먼저 여기서 ‘모던 어워드(Modern Awards, 이하 Awards)’란, 각 산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별 적용되는 고용 조건 및 최저임금 수준을 명시한 법률

2) *Annual Wage Review 2017-18-Decision.*

3) 그러나 개별 최저임금은 국가 최저임금 수준을 기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 최저임금이 그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문서를 일컫는다.<sup>4)</sup> 공정근로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는 100개 이상의 어워드가 존재한다. 즉, 100개 이상의 산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해당 근로 환경을 특별히 고려한 보상을 받는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고용 조건에 대한 협약을 맺고 공정근로위원회가 이를 승인한 경우(Registered Agreement)에는 어워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 최저임금 내역은 각 어워드 문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정근로위원회는 각 어워드 원본 문서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sup>5)</sup>

일례로, 소방산업 어워드 2010(Fire Fighting Industry Award 2010)을 살펴보겠다.<sup>6)</sup> 이 문서는 소방산업 종사자들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추가 지급금(Part-time loadings)이나 휴일 수당 등을 명시하고 있다.

<표 1>은 소방산업 어워드에 수록된 민간 소방산업 종사자 대상 최저임금 수준이다. 현행 국가 최저임금이 주당(38시간 기준) 719.20호주달러(한화 약 58만 8천 원)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 소방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경력이나 직업훈련 수준에 따라 각 어워드 내에서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 민간 소방산업 최저임금

분류	최저임금 지급기준(38시간 근무)
신입/소방관 레벨 1/소방관 레벨 21	749.40호주달러(한화 약 61만 3천 원)
소방관 레벨 3	760호주달러(한화 약 62만 2천 원)
공인자격증 소유 소방관 (Qualified Firefighter)	772.90호주달러(한화 약 63만 1천 원)
소방관 팀장 (Leading Firefighter)	837.40호주달러(한화 약 68만 5천 원)
소방서 근무 소방관 (Station Officer)	958.10호주달러(한화 약 78만 4천 원)
선임 소방서 근무 소방관 (Senior Station Officer)	1038.60호주달러(한화 약 85만 1천 원)

4) <https://www.fairwork.gov.au/awards-and-agreements/awards>

5) 현행 어워드 목록은 <https://www.fairwork.gov.au/awards-and-agreements/awards/list-of-awards>을 참조.

6) <http://awardviewer.fwo.gov.au/award/show/MA000111>

다음은 외식산업(Restaurant Industry awards 2010)<sup>7)</sup>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소방직에 비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초보 근로자의 경우 국가 최저임금 수준과 동일한 금액이 설정되어 있다. 이 어워드는 경력보다는 업무 범위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업원 등급 2로 분류된 근로자는 종업원 등급 1 근로자가 하는 업무도 포함해서 수행하지만 그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주류 제공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표 2> 외식산업 최저임금

분류	최저임금 지급기준(38시간 근무)
초보	719.20호주달러(한화 약 58만 8천 원)(국가 최저임금 수준)
종업원 등급 1 - 빈그릇 수거, 테이블 정리 등	739.90호주달러(한화 약 60만 5천 원)
종업원 등급 2 - 주류 제공, 스넥바 근무 등	768.30호주달러(한화 약 62만 8천 원)
종업원 등급 3 - 종업원 교육 및 관리 등	794.70호주달러(한화 약 65만 원)
- 이하 생략 -	

이처럼 공정노동위원회는 매년 국가 최저임금과 더불어 개별 최저임금 수준을 모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 등의 의사결정을 내린다.<sup>8)</sup>

## 다양한 통계지표 기반 의사결정

「2009년 공정근로법」 제284조 1항 ‘최저임금 목적(The Minimum Wages Objective)’과 제134조 1항 ‘모던어워드 목적(Modern Awards Objective)’에 따르면, 공정근로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7) [http://awardviewer.fwo.gov.au/award/show/MA000119#P408\\_40874](http://awardviewer.fwo.gov.au/award/show/MA000119#P408_40874)

8) 개별 최저임금 수준을 4년마다 심층 검토하는 리뷰 절차가 존재하였으나 2018년에 개정법에 따라 폐지되었다. 관련 내용은 <https://www.fwc.gov.au/awards-agreements/awards/modern-award-reviews/4-yearly-review>를 참조.

- 국가 경제 성과 및 경쟁 환경(생산성, 비즈니스 경쟁 환경, 물가상승, 고용률 추세 등)
-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
- 모던어워드가 미치는 영향력 고려 - 생산성, 고용비용 등
-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수준 및 기본 욕구 충족
- (이하 9개 생략)

이에 따라 공정근로위원회는 상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다양한 경제 및 사회 지표들을 활용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한다.<sup>9)</sup> 또한 위원회는 각종 단체에서 제출한 문서들과 위원회에서 작성한 관련 연구문헌 목록에 나와 있는 연구보고서 결과들도 참고한다.

의사결정에 사용된 통계지표 데이터는 연간 『근로소득리뷰』 보고서 내 수록된 ‘통계보고서 (Statistical report)’에서 공개한다.<sup>10)</sup> 2019년 4월 4일에 발간된 통계보고서는 오는 6월에 발표될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되는 통계지표들을 수록하고 있다.

<표 3>은 해당 보고서에 수록된 지표들을 요약한 것으로,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어떠한 통계지표들을 참고하는지 보여준다.<sup>11)</sup>

이 보고서는 임금이나 고용률 등 근로자 관련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성장 추세와 노동 수요자가 처한 환경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업 부도율이나 생존율 추세에 관한 정보는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이 현재 처한 산업 운영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반적인 국가 경제 관련 지표로는 GDP나 저축률, 주요국 대비 경제 성장률 등을 수록하고 있다.

노동 공급자 측면의 지표도 매우 다양하다. 소비자 물가나 임금 상승률 등뿐만 아니라 Gini 계수와 같이 전체 소득분포에 관한 통계도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여성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육원 서비스 비용과 남녀 간 임금 차이에 대한 통계치도 제공한다.

9) 상기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사회 후생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일 뿐, 개별 요소가 고려되었는지를 평가하지는 않는다.

10) 공정근로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데이터는 참고용일 뿐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데에는 쓰이지 않는다.

11) *Statistical report—Annual Wage Review 2018 - 19.*

<표 3> 2019년 통계보고서 내용

보고서 구성	구성 내용
1. 경제성장	과거 10년 경제성장률/실질세후국가소득(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추세, 최근 경제성장률 주요국 대비 비교, 산업별 총부가가치 창출 성장률 비교 등
2. 생산성	과거 10년 생산성지수/노동비용 추세,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화 추세 등
3. 기업 경쟁환경 및 생존능력	과거 10년 총요소소득(Total Factor Income) 중 이윤 및 근로소득 비중 추세, 중소기업 및 전체 기업 이윤율 비교, 과거 10년 기업 부도율 및 진입/진퇴율, 기업 생존율 등 사업 운영 환경 관련 지표
4. 물가상승	과거 10년 소비자물가 및 근로소득기반 가계 생활비 추세 등
5. 임금	과거 전체/산업별 명목 및 실질 임금 지수 상승률, 산업별 풀타임 비관리직 근로자(Full-time Non-managerial Employees) 평균 시급 등
6. 노동시장	고용, 월 근로시간, 실업자 수, 실업률 등 변화 추세,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자 최근 1년간 근로시간 변동 추세(산업별/직종별)
7. 어워드 현황	비관리직 근로자 중 어워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 어워드 적용 산업별 경제지표
8. 생활 수준	가구 세후소득 Gini 계수, 중위소득 등 주로 소득분포에 관한 내용

이 밖에 9장 실질 소득 및 생활비(Real wages and the cost of living), 10장 기업 협상(Enterprise Bargaining), 11장 동등한 보상(Equal remuneration), 12장 금융스트레스(Financial stress) 지수, 13장 추계(Forecasts), 14장 보육원 서비스 비용, 15장 중앙은행 통화 정책 회의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 각 계층 최저임금 조정 의견 수렴

「2009년 공정근로법」 제289조 1항은 누구나 최저임금 조정안을 제출하고 결정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으며, 위원회는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2)</sup> 또한 제출된 조정안들은 모두 연간 『근로소득리뷰』 보고서에 공개되어야 한다.<sup>13)</sup> 즉, 최저임금 조정안을 단지 연방정부, 주정부 및 공식 이익단체들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제도는 위원회가 단순히 몇 개 이익단체나 정부기관뿐만 아

12) 2009년 공정근로법 “289 (1) The FWC must, in relation to each annual wage review, ensure that all persons and bodies have a reasonable opportunity to make written submissions to the FWC for consideration in the review.”

13) 다만, 조정안 제출자가 익명을 요구한 경우 그 제안 내용을 반드시 보고서에 수록할 필요는 없다.

나라 업계나 노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다.

다음은 2018년 『근로소득리뷰』 보고서에 공개된 최저임금조정안 제출 내역이다.<sup>14)</sup>

<표 4> 2017~18 최저임금조정안 제출자 및 제안사항

제출자	제안내용	
	국가최저임금 인상폭	개별최저임금 인상폭
호주 정부	최저임금 인상 수치 미제출	
뉴사우스웨일즈주 정부	최저임금 인상 수치 미제출	
퀸즐랜드주 정부	주급기준 \$27.10 인상	수치 미제출
빅토리아주 정부	주급기준 \$27.10 인상	
야당(Federal opposition)	수치 미제출/실질적 인상을 제안	
호주노동조합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7.2% 인상	7.2% 인상
호주산업연합(Australian Industry Group)	1.8% 인상	1.8% 인상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1.9% 이하 인상	1.9% 이하 인상
호주사회복지서비스협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수치 미제출	
호주고용주및산업협회(Australian Federation of Employers and Industries)	1.9% 이하 인상	
호주호텔연합(Australian Hotels Association)	1.9% 이하 인상	
호주유통업자연합(Australian Retailers Association)	1.9% 인상	수치 미제출
Lee, Walter(개인)	수치 미제출	
이하 2개 생략		

<표 4>에 따르면 산업계는 약 2% 이하를, 노동계는 7% 이상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고, 수치를 제안하는 대신 의견을 보낸 기관이나 개인도 있다. 예를 들어 호주외식협회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현 경제상황이 최저임금 인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결과적으로 2017~18 국가최저임금 인상률은 3.5%(주급기준 \$24.30(한화 약 1만9천 원) 인상)로 노동계와 산업계 제안 인상률 사이였다.

14) Annual Wage Review 2017-18 - Decision.

## ■ 관련 논의 및 쟁점

2019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노동당은 최저임금을 '생활임금(Living Wage)'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5)</sup> 일반적으로 생활임금이란 빈곤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임금 수준으로, 다시 말해 기본적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 수준이다. 노동당은 더 구체적으로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한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임금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생활임금 계획(Living Wage Plan)을 발표하여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오는 새 회계연도부터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우선 산업계 등 각 계층에서 생활임금 수준에 대한 제안서를 공정근로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게 된다. 그다음,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 최저임금이 향후 생활임금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한다.

호주노동조합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는 더욱 구체적으로 '생활임금'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풀타임 근로자 중위소득의 60%로,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의 54% 밖에 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2018년 9월에 발표된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연구결과는 이러한 노동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호주중앙은행 경제학자 James Bishop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개별최저임금 및 노동시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이 임금 수준과 노동시간 및 일자리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별최저임금(Modern Awards Minimum Wage) 인상은 해당 산업 혹은 직종 내 임금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근로시간이나 일자리 수 등 고용감소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sup>16)</sup>

반면 현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생활임금 수준 이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제출한 최저임금조정안을 통해 영국에서 정의하는 '생활임금'은 풀타임 중위

15) <https://www.smh.com.au/business/workplace/labor-s-living-wage-is-different-to-the-minimum-wage-here-s-how-20190326-p517o0.html>

16) <https://www.rba.gov.au/publications/bulletin/2018/sep/the-effect-of-minimum-wage-increases-on-wages-hours-worked-and-job-loss.html#fn0>

소득 기준이 아니라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중위소득의 60%라고 지적하였다. 영국 기준에 따르면 호주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생활임금 수준 이상이라는 것이다.<sup>17)</sup>

## ■ 맺음말

호주의 최저임금결정제도 사례는 우리나라 정책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산업, 직종, 경력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 장치가 인상적이다. 또한 위원회가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할 때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고 각계 각층의 제안을 수렴하며 이를 공식적으로 보고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제도장치라는 의미이다. 단일 최저임금수준 인상폭에 국한된 논의보다도 현행 제도가 근로자가 처한 다양한 경제상황이나 업무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하여, 향후 최저임금제도가 그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KCL**

17) <https://www.afr.com/leadership/workplace/minimum-wage-already-a-living-wage-by-uk-standards-20190404-p51ap4>

---

---

## 참고문헌

---

---

- FairWork Commission(2018), “Annual Wage Review 2017-18 - Decision,” (<https://www.fwc.gov.au/awards-agreements/minimum-wages-conditions/annual-wage-reviews/annual-wage-review-2017-18>)
- \_\_\_\_\_(2018), “Annual Wage Review 2017-18 - Order,” (<https://www.fwc.gov.au/documents/awardsandorders/html/pr606629.htm>)
- \_\_\_\_\_(2019), “Statistical report—Annual Wage Review 2018-19,” 4 April 2019 (<https://www.fwc.gov.au/documents/wage-reviews/2018-19/statistical-reporting/statisticalreport.pdf>)